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이 승 렬**

1. 머리말

「2005년은 자영업자가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한 원년」(이승렬, 2011: 2)이라고 『노동리뷰』(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0월호 노동포커스에 쓴 적이 있다. 이는 2005년 5월 31일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내용을 두고 한 말이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적 일자리 제공을 들며,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실업급여가 있다. 직업훈련 제공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라 하면, 정부가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모두 자영업자에게 실시한다는 것인 만큼 자영업자를 ‘일하는 사람(취업자)’으로 해석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겠다.

노동시장 정책의 원년이라 할 만한 2005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의 눈물”, “위기의 자영업”, “벼랑 끝 자영업”, “무너지는 자영업”, “자영업의 비명”, “자영업의 추락”, “폐업 쓰나미” 등과 같이 최근의 신문지면 기사 제목은 참으로 끔찍할 정도이다. 그야말로 이 제목대로라면, 자영업은 ‘활력’을 잃어 죽음에 내몰린 상황이 아닌가 싶다. 마치 머지않아 자영업 영역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르르 거리로 내몰려 나올 듯한 위기감마저 느끼게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강지수·전현배·조장희(2017)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중심 서비스업에서 관측되는 활발한 창업 및 폐업은 과당경쟁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생산성 성장 과정”(p.1)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이른바 유동

* 이 글은 장지연 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발간예정)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통계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손창현씨(한국노동연구원 RA)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yeesy@klii.re.kr).

성이 높다면, 생산성이 높은 ‘활력’의 사회라 이해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언론은 ‘자영업 폐업률 90%’라는 기사 제목으로 자영업의 위기를 말하고자 할까?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90%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폐업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다른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가 인용하는가 하면,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머니투데이 2018. 9. 6 기사)¹⁾이라는 칼럼도 나오기까지 하였다.

2005년에도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우려되어 5·31대책이 강구된 만큼 2018년 현재도 ‘퇴출’되는 자영업자를 사회가 ‘포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포용이 활력으로 연결되는 장치를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이 글은 살펴보려 한다.

II. 통계로 보는 자영업

1. 줄어드는 자영업자

먼저 이 글이 보고자 하는 대상인 자영업자의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하되 여기에서는 농·임·어업을 제외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분야의 자영업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농림어업 부문의 자영업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자영업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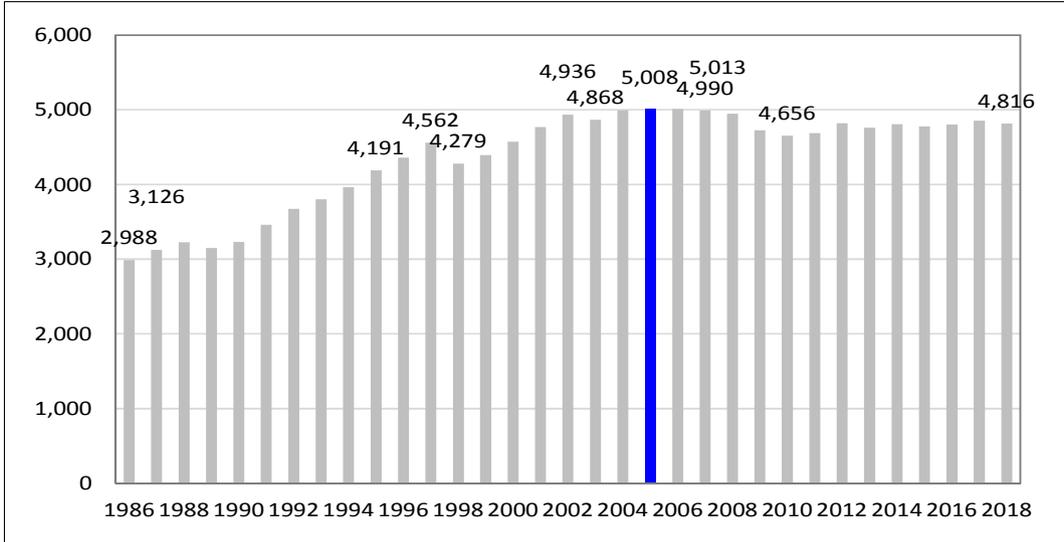
[그림 1]을 보면,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황기를 맞이하던 1986년 자영업자 수는 2,988천 명으로 3백만 명에서 12천 명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음 해인 1987년에는 138천 명이 늘어나 3,126천 명으로 3백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로부터 8년 뒤인 1995년에는 자영업자 수가 4,191천 명으로 4백만 명을 넘어서나 외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1997년의 영향이 1998년에 나타나 1997년보다 283천 명 줄어드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이때 많은 실업자가 다시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만~20만 명이 증가하여 2002년에는 4,936천 명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5백만 명 시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던 2003년 이른바 ‘카드대란’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이 폭증하면서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도 크게 늘어났다. 이 사태는 자영업에 악영향을 미쳐 자영업자 수가 68천 명 줄어들어 4,868천 명을 기록하였다. 당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자영업자가 퇴출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대책을 서둘렀다. 하지만 그 우려가

1) 해당 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그림 1] 자영업자 수 추이(농림어업 제외; 1986~2017)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해당 연도.

가시질 않자 2005년 이른바 ‘5·31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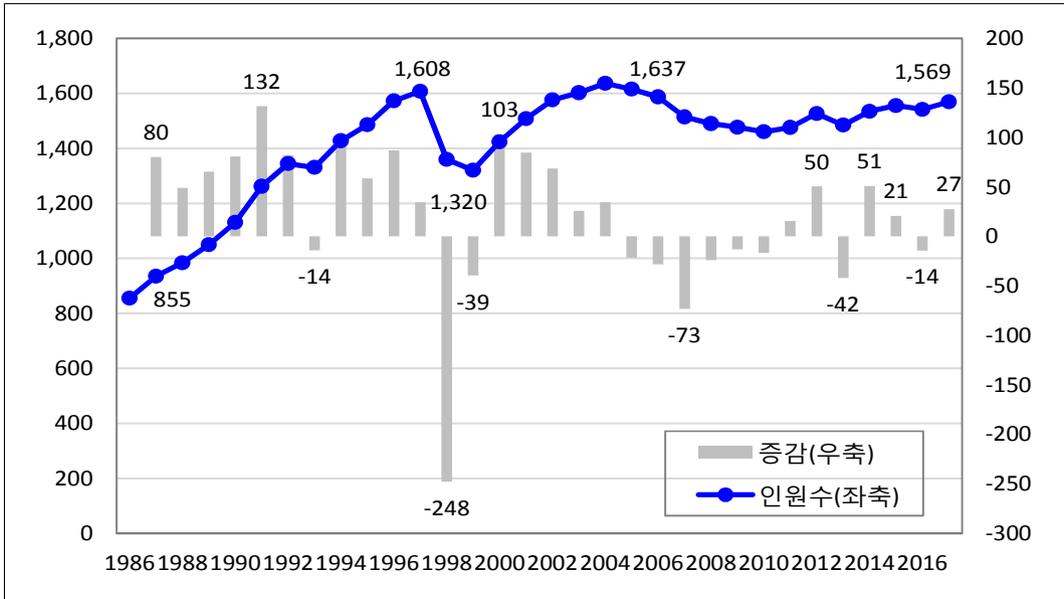
2005년에는 자영업자 수가 5,008천 명으로 5백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자영업자 수를 다시 4백만 명대로 떨어뜨렸으며, 자영업자 수의 감소는 2007~2010년 4년간에 걸쳐 일어남으로써 2010년 4,656천 명까지 감소하였다.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른바 ‘메르스(MERS)’) 사태가 있었던 2015년에 31천 명이 감소하고, 그 뒤로는 증가 양상을 보여 2017년에 4,855천 명에 이르렀다. 참고로 2018년 8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4,752천 명이다.

그런데 자영업자 내에서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인원수가 1986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1997년에 1,608천 명까지 늘어났다. 다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1,360천 명과 1,320천 명으로 줄어드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1,637천 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증감을 거듭하나 2017년에는 1,569천 명으로 약간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감소를 본다면, 1998년의 248천 명 감소, 2007년의 73천 명 감소, 2013년의 42천 명 감소 정도이다. 참고로 2018년 8월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94천 명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1989년에 140천 명이 감소하여 1990년에 2,102천 명을 기록한 뒤에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외환위기의 영향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그림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 증감 추이(농림어업 제외; 1986~2017)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해당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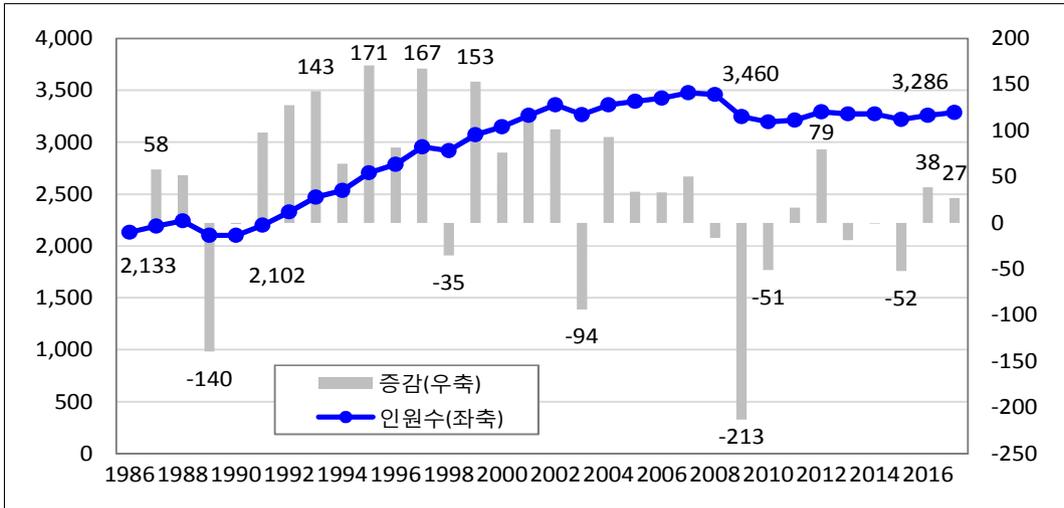
도 미쳤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는 낮아 1998년에 35천 명이 감소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1999년에는 153천 명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실업대란’의 완충을 자영업 부문이 감당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이다. 이는 2007년까지 지속되어 2007년에는 3,476천 명으로 정점에 이른다. 이 사이에 카드대란 사태의 영향으로 보이는 94천 명의 감소가 2003년에 있었다. 2008년에는 전년대비 16천 명의 감소가 따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커서 2009년 213천 명 감소, 2010년 51천 명 감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에는 52천 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다만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8천 명과 27천 명이 증가하였다. 참고로 2018년 8월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3,158천 명이다.

이로 본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1.6백만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2~3.3백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고용동향에서 확인이 되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이 추세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자영업자의 감소는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일자리 변동은 어떠한가를 「한국노동패널조사」 2010~2017년 데이터로 확인해보았다. [그림 4]는 매년 자영업자가 다음 해 어떠한 종사상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2010~2017년 평균을 얻고, 이 평균의 구성비를 얻은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먼저 고용원이

[그림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 증감 추이(농림어업 제외; 1986~2017)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해당 연도.

없는 자영업자의 74.6%는 다음 해에도 계속 그대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18.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하고, 0.6%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93.4%는 자영업(비임금노동) 부문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81.0%는 다음 해에도 같은 종사상 지위에 있었으며, 9.2%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였다. 0.4%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함으로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90.6%는 역시 자영업 부문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영업자는 자영업 부문을 떠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이 통계 결과로부터 확인된다. 아울러 4~5%로 낮은 수준이긴 하여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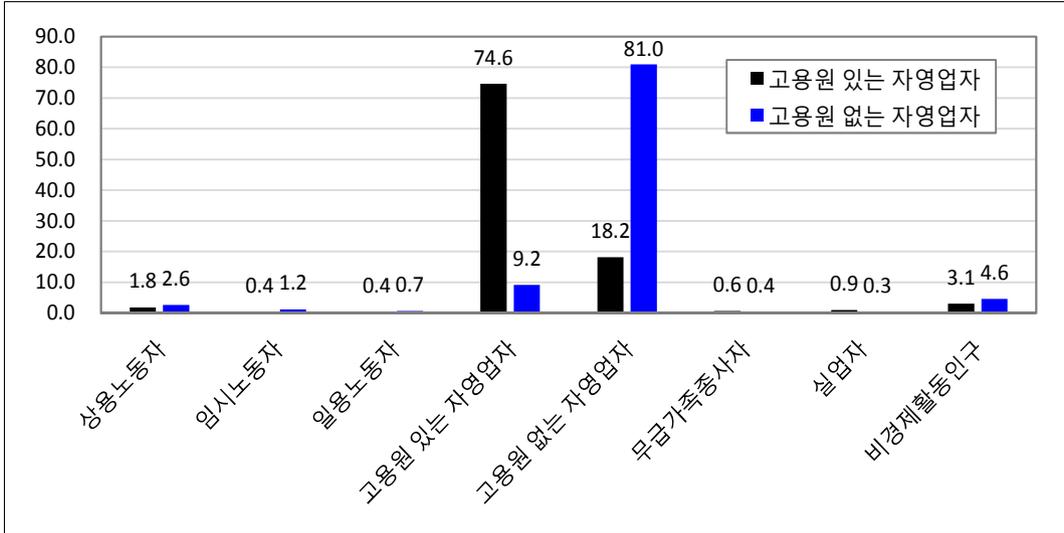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확인해보았다. 비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2017년 말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8년 1월에는 84천 명, 2월에는 105천 명, 3월에는 90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약간 감소폭이 줄어들다 7월에는 99천 명, 8월에는 112천 명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기사나 칼럼이 언론 매체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6~8월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2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지속하였다.2) 하지만 이와

2)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하여 고용원을 신고하면서 나타난 결과일지 모른다고 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행정통계가 아니라 조사통계이므로 이 영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여도 충분할 수준일 것이다.

[그림 4] 자영업자 이동 상황(농림어업 제외; 2010~2017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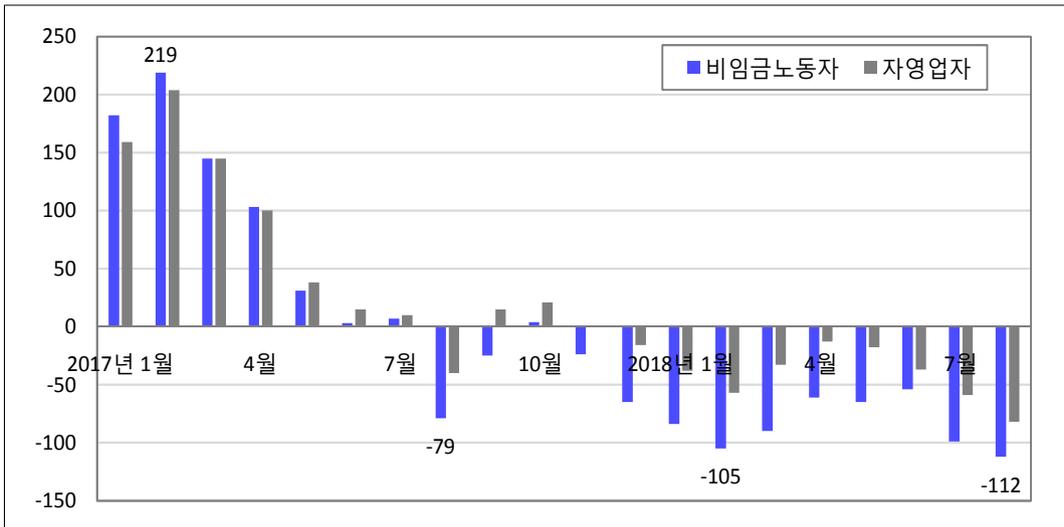
(단위 :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그림 5] 비임금노동자·자영업자 증감 추이(농림어업 제외; 2017.1~2018.8)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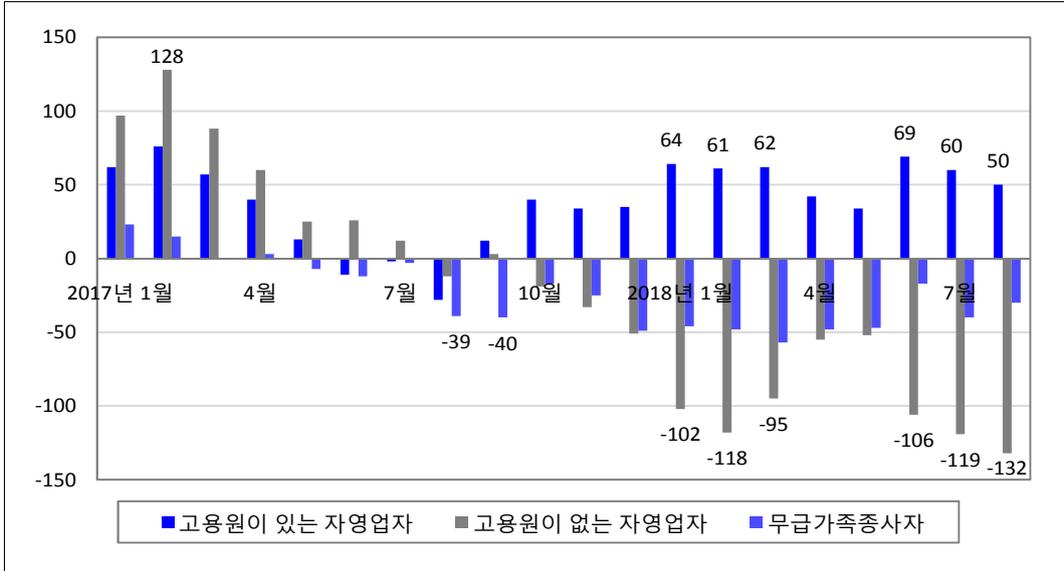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해당 연도.

달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2017년 8월부터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다.3)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그림 6]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농림어업 제외; 2017.1~2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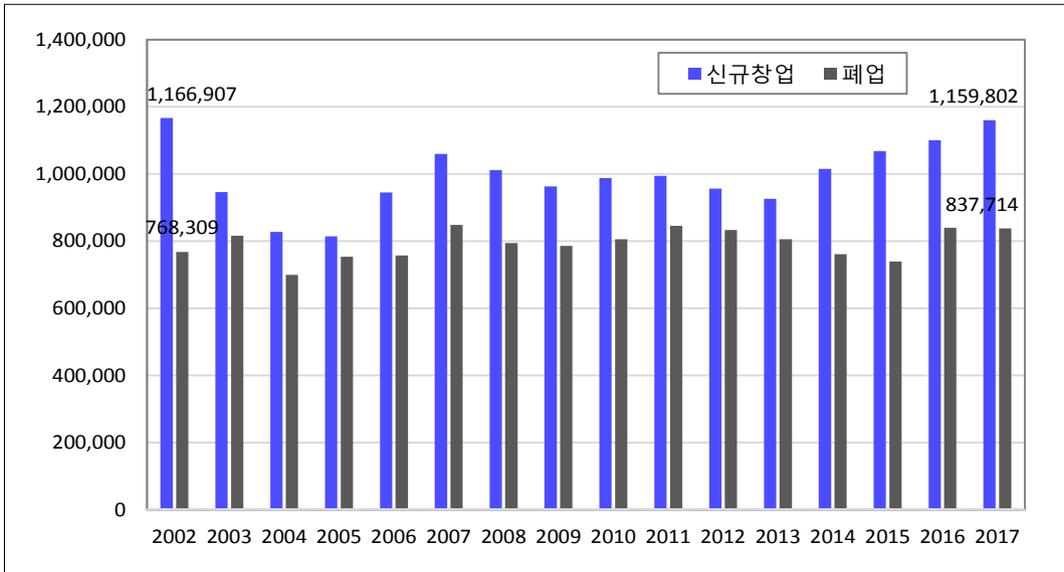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해당 연도.

[그림 7] 개인사업자 신규창업·폐업 추이(2002~2017)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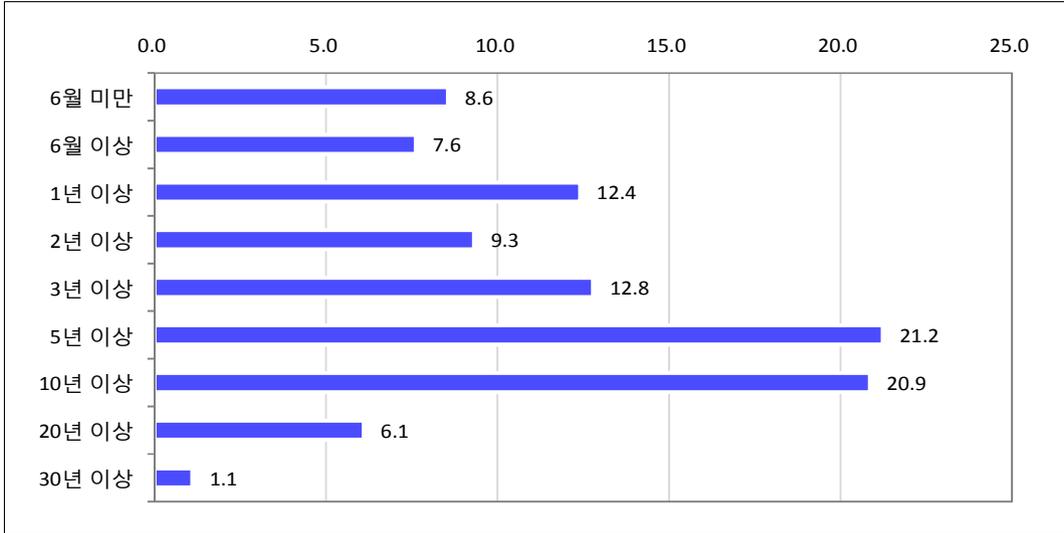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해당 연도(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년 9월 17일에 내려받음).

3) 경제활동인구조사 응답자는 3년간 유지되므로 패널로 만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폐업자 존속 현황(2016년)

(단위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년 9월 17일에 내려받음).

경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게다가 늘어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업종에서 줄어들고, 어느 지역, 어느 업종에서 늘어나는지도 살펴보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개인사업자 신규창업과 폐업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신규 창업은 1백만 명 수준에서 그리고 폐업은 70만~80만 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폐업자의 존속기간을 보면, 2016년의 경우에 3년 미만이 37.9%에 이른다. 5년 미만은 절반 수준에 가깝다.

2. 소득 ·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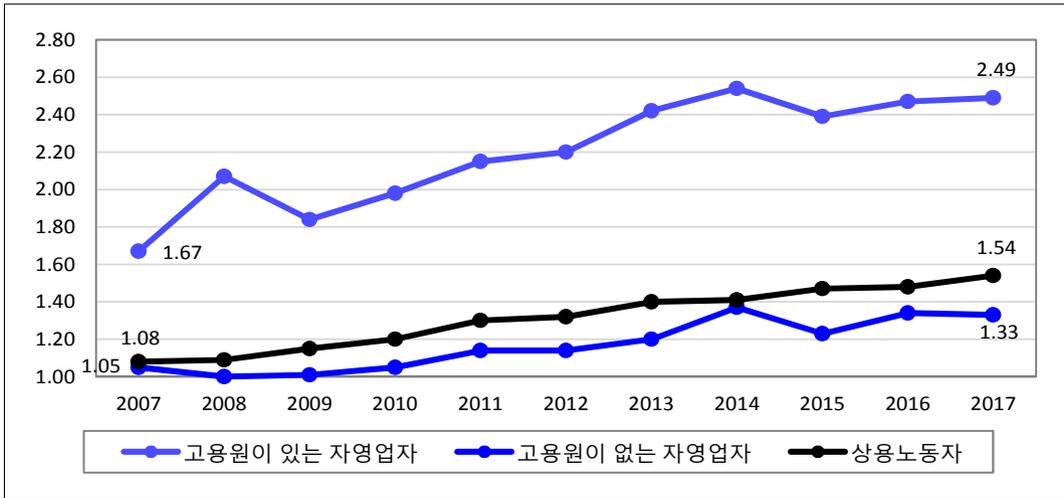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소득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당 소득을 얻었다.⁴⁾ 상용노동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하면, 일관되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용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반대로 상용노동자보다 소득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 이는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월평균 소득으로 비교하여도 같은 결과이다.

4)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당노동시간에 4.3을 곱하여 월간노동시간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2009년 적자 비율이 자영업자 전체

[그림 9] 종사상 지위별 시간당 소득(농림어업 제외; 2007~2017년)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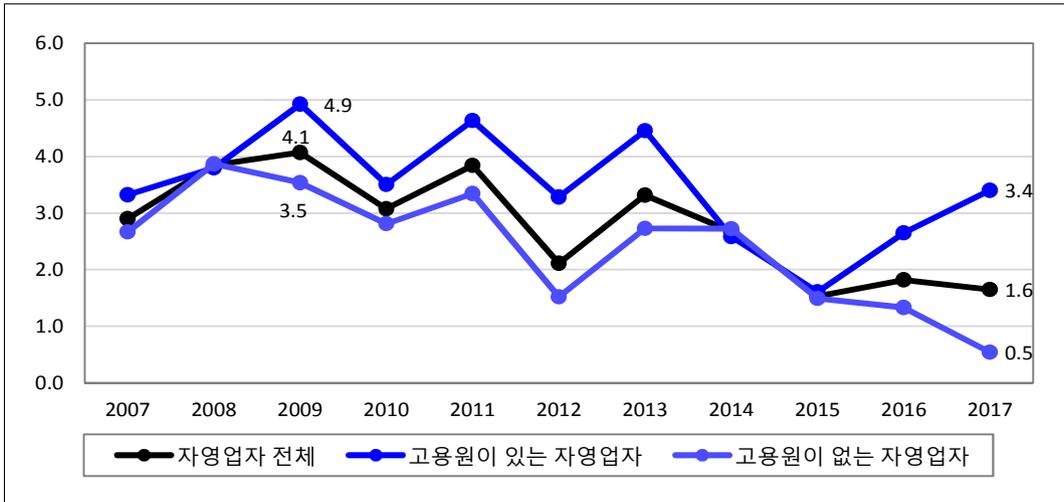


주 : 1) 자영업자의 경우는 적자를 제외하였으며, 상용노동자는 임금을 기준으로 함.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그림 10] 자영업자 적자 비율 추이(농림어업 제외; 2007~2017년)

(단위 : 만 원)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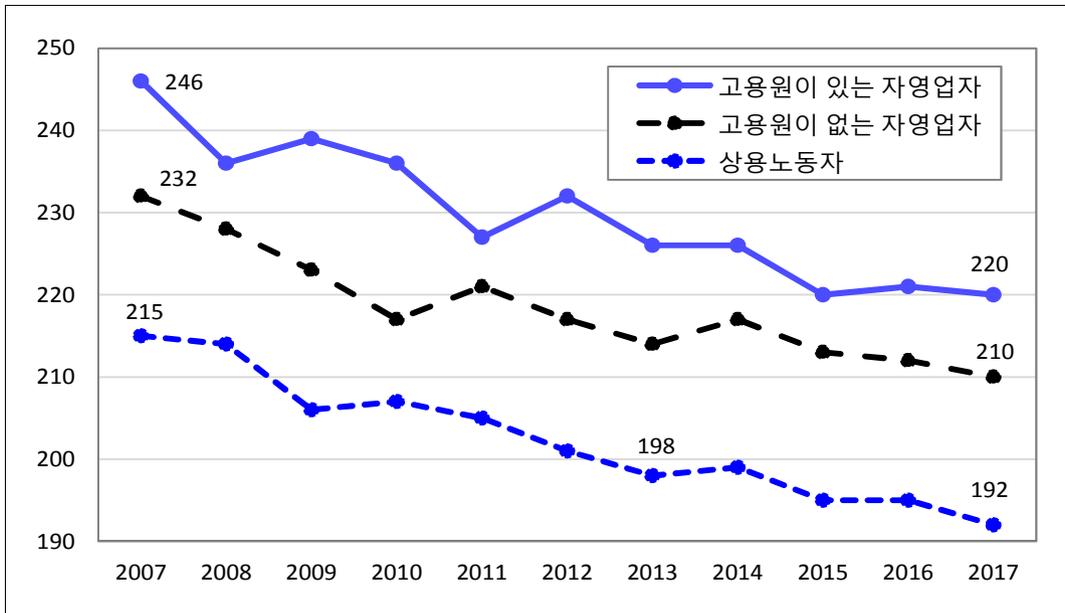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의 경우에 4.1%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적자 비율은 더욱 높아 4.9%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3.5%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속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적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은 소득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월평균 노동시간이 220시간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이보다 10시간이 적은 210시간이며, 상용노동자는 192시간이다. 다만 추세로는 모두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11] 종사상 지위별 주당 노동시간(농림어업 제외; 2007~2017년)

(단위 : 시간)



주 : 1) 월간 노동시간 = 주당 노동시간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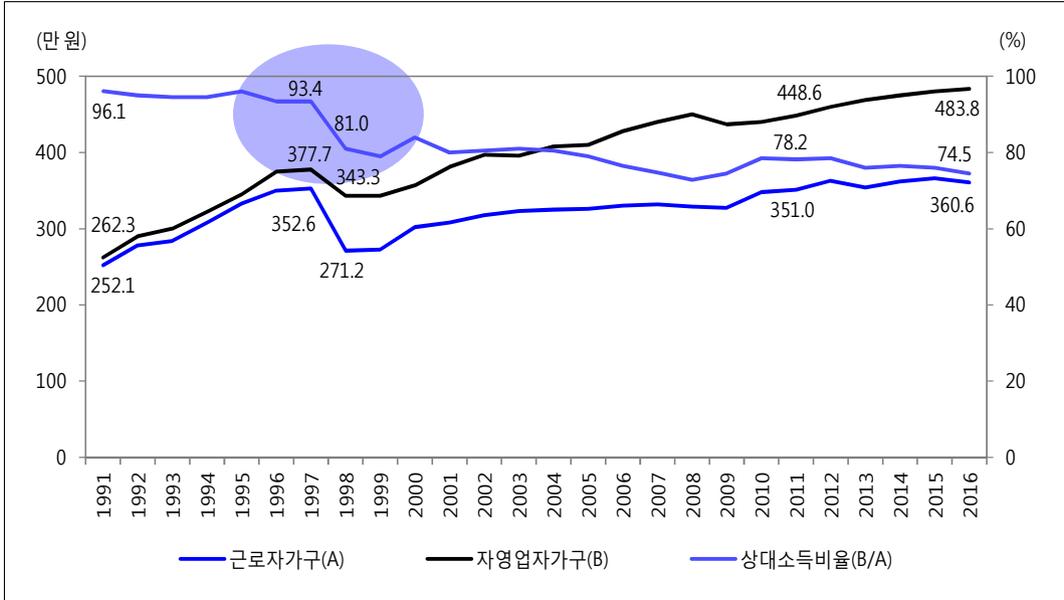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최근에 나온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991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연평균 1.4% 증가하였으나 근로자 가구는 연평균 2.5%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근로자 가구 대비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소득은 2003년 55.1%에서 2016년 48.7%로 6.4%p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경우에도 84.3%에서 80.9%로 떨어져 3.4%p의 하락폭을 보였다고 한다.

[그림 12] 자영업자 가구·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상대소득 비율 추이(1991~2016)

(단위: 만 원, %)



주: 실질소득은 경상소득에 소비자물가지수(2015 = 100)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p.37.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확인이 되는 자영업 가구주의 부채 현황도 심각하다. 2017년의 경우에 1인당 부채가 잠정치이긴 하지만 1억 원을 넘어서며,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8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게다가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정호성(2018)에 따르면, 대출잔액 1% 증가가 자영업 차주의 부도확률을 1.1%p 상승시킨다고 하며, 가산금리 상승과 추가차입도 부도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표 1] 자영업가구주 부채 현황(2012~2017)

(단위: 만 원, %)

시점	부채	금융부채	부채/자산	부채/금융자산	부채/가처분소득	금융부채/금융자산
2012	7,960	6,029	17.9	82.6	196.5	62.6
2013	8,858	6,586	18.8	82.6	208.2	61.4
2014	9,051	6,749	19.0	85.3	201.3	63.6
2015	9,443	6,980	19.4	85.6	206.8	63.3
2016	9,726	7,523	19.9	87.5	213.1	67.7
2017(p)	10,087	7,834	20.3	90.8	214.8	70.5

주: 2017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해당 연도(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년 9월 17일에 내려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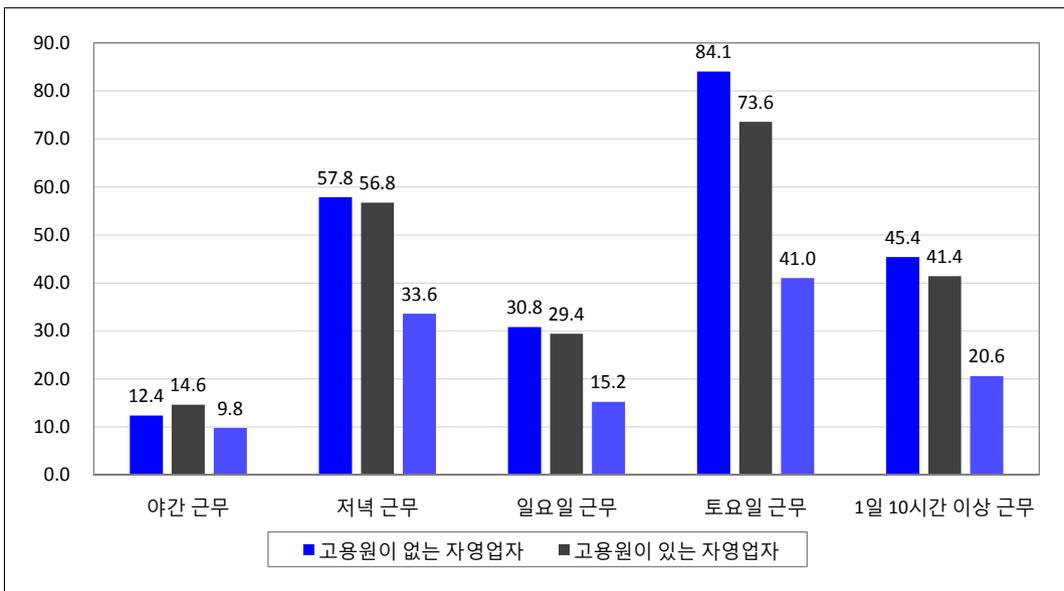
3. 노동환경 · 건강 · 만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조사가 실시된다. 2017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저녁·야간 근무, 토·일요일 근무, 1일 10시간 이상 근무 모두에서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근무경험 비율과 평균 근무일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⁵⁾ 자영업자 내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대체로 평균 근무일수가 더 긴 편이었다.⁶⁾

이처럼 장시간 근무일수가 많고, 주말에 근무하거나 저녁·야간에 근무를 하는 일수가 많은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다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그림 13] 종사상 지위별 근무여건(농림어업 제외; 2017년)

(단위 : %)



주 : 1) 이 응답은 해당 사항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임에 유의.

2) 모름·무응답·응답거절 제외.

3)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자료(베타버전), 2017.

5) 원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윤호 차장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데이터는 비공개 베타 버전으로서 자료가 완전하게 정리된 것은 아닌 만큼 결과를 인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6) 토·일요일 근무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설문이 주 근무일수가 아니라 토·일요일 근무이므로 응답자가 휴무를 평일에 가지는 경우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표 2〉 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무일수(2017년)

(단위 : 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야간 근무일수	15.1	16.5	9.7
저녁 근무일수	19.8	18.7	11.8
일요일 근무일수	3.2	3.3	2.6
토요일 근무일수	3.7	3.7	3.1
1일 10시간 이상 근무일수	18.6	17.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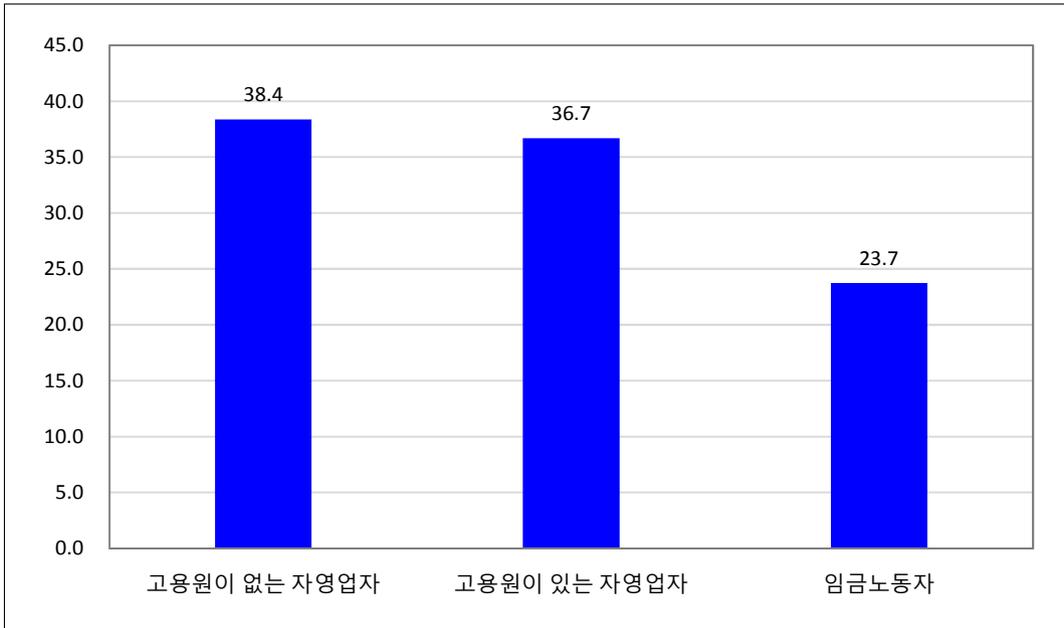
주 : 1) 조사월이 7월이었으며, 토·일요일이 5일이었음.

2)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자료(베타버전), 2017.

〈그림 14〉 가정생활·사회생활을 하기에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은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모름·무응답·응답거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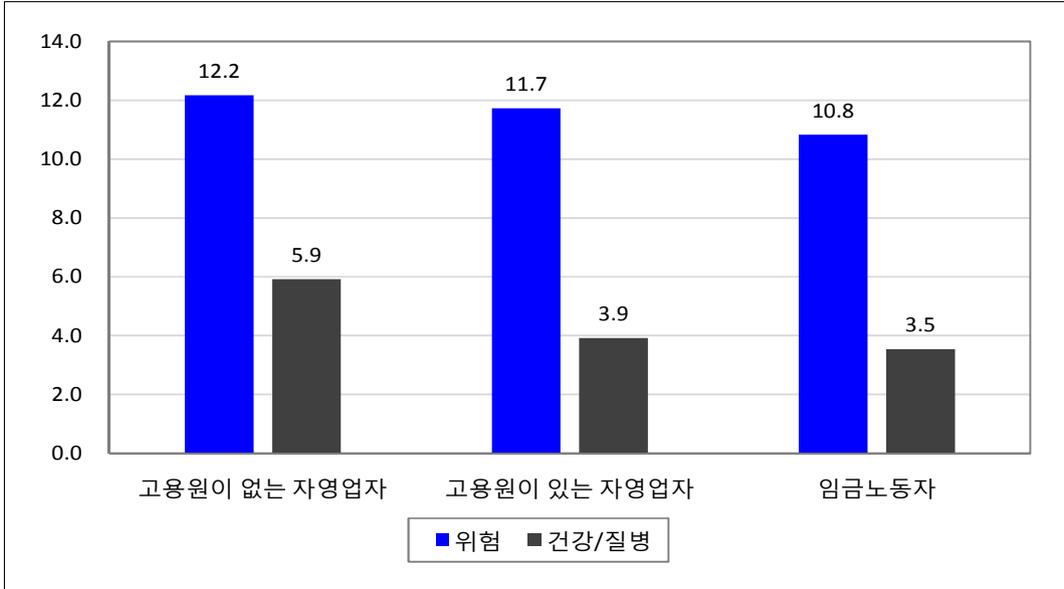
2)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자료(베타버전), 2017.

그리고 업무가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도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높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높은 편이다. 게다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비율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9%였다.

[그림 15] 업무 위험과 건강 문제(2017년)

(단위 : %)



주 : 1) 모름·무응답·응답거절 제외.

2)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자료(베타버전), 2017.

4.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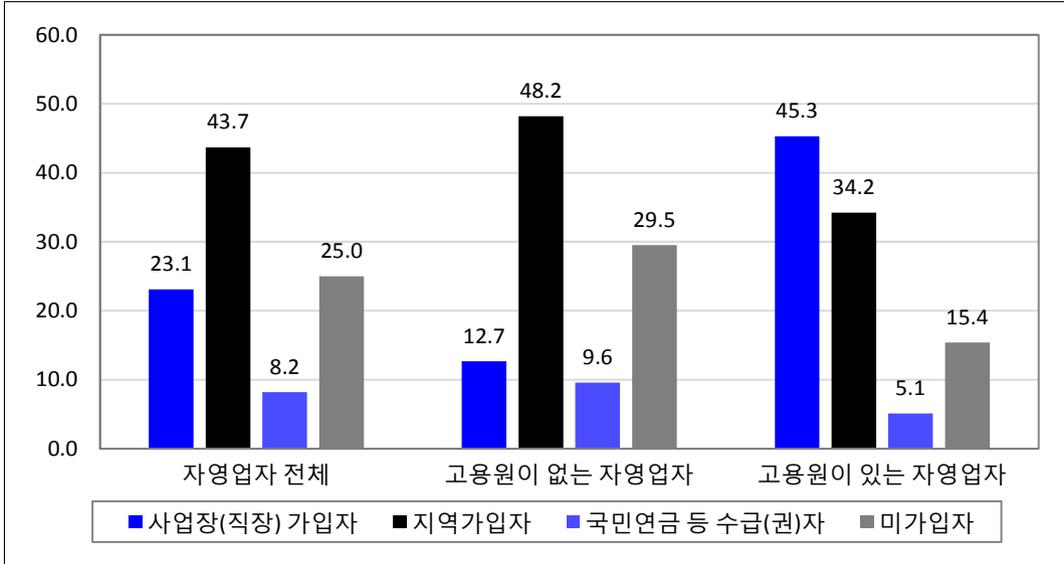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에서 자영업자 전체의 25.0%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더욱 커서 29.5%에 이른다. 말하자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2012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에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그 뒤로 폐업,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자격이 소멸되는 자영업자가 연간 5천 명 정도가 되어 가입유지자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로 제한하였던 가입 자격을 1년 이내로 완화하고(2015년 12월), 다시 2017년 12월에는 5년 이내로 더욱 완화하였다. 2018년 6월 현재는 18천 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7)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4년에 1,476명으로 최고 수치를 보였으나 대체로 1천 명대 수준이다.

7)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부터 확인하였다.

[그림 16]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수급(권) 현황(2017년 8월 현재; 농림어업 제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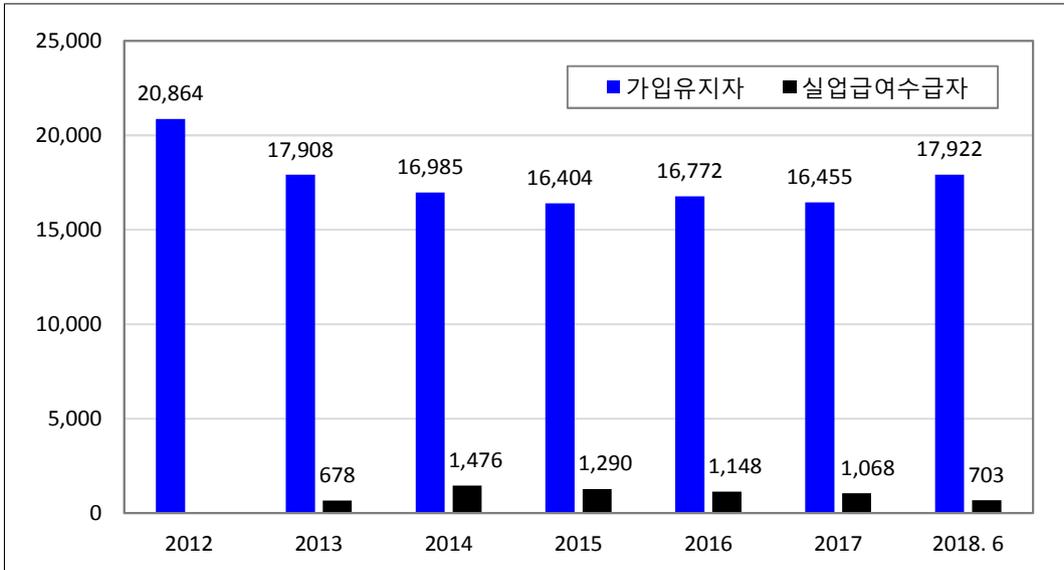


주 : 수급(권)자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2017년 8월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년 9월 1일에 내려받았음).

[그림 1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자·실업급여 수급자 추이(2012~2013)

(단위 : 명)



주 : 실업급여 수급자 2018. 6은 2018. 1~6 누적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내부자료.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하여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여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⁸⁾에서 2016년 12월 말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19,886명이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가 확인하고 있듯이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도 재해가 초래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체결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폐업을 한 영세자영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을 포함한 점은 고무적이다.

5. 직업훈련

전인우·정완수(2014)는 2014년 당시의 자영업 정책이 2005년의 ‘5·31 대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한다(p.5).⁹⁾ 시작은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으로 보고 있다. 5·31 대책에 온누리상품권 도입, 나들가게와 중소프랜차이즈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소공인 지원 등이 추가되어 2014년 당시의 자영업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한다(p.5).

5·31 대책이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취업자’로 간주하고,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제공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다. 전자는 노동시장 정책이자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가 영세자영업자에게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업종 전환이나 전직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축적 기회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축적 기회가 확보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다른 일자리로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영업

8) 해당 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9) 홍석일·지민웅·신종원·한창용(2016)도 같은 의견이다(p.174).

자 대상의 고용보험제도는 7년 뒤인 2012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영세자영업자 대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현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제5조)에 영세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이들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하다.

3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현황을 보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연인원 47천 명이 직업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5~2014년 10년간 연평균 4천 명 수준의 훈련참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표 3〉 연도별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실시 현황(2015. 8. 기준)

(단위 : 명, %)

	실시인원	중도탈락인원	훈련 중 취업인원	수료인원(A)	훈련 중	수료 후 취업인원	취업률(B/A)
2005	13	3	1	9	-	3	33.3
2006	2,542	604	26	1,912	-	171	8.9
2007	2,550	434	46	2,070	-	201	9.7
2008	2,228	440	58	1,730	-	165	9.5
2009	3,991	772	108	3,111	-	591	19.0
2010	2,577	485	64	2,028	-	382	18.8
2011	3,883	472	57	3,354	-	758	22.6
2012	6,609	638	90	5,881	-	1,415	24.0
2013	10,881	823	148	9,910	-	2,549	25.7
2014	7,256	524	97	6,635	-	2,039	30.7
합계	42,530	5,195	695	36,640	-	8,274	22.6
2015	4,158	272	81	3,106	699	492	-

주: 1)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성과를 훈련 중 취업인원과 같은 조기취업자를 제외한 수료자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2) 합계에서 2015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5년 취업률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취업률은 훈련종료 후 6개월 이후에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임(통상 훈련실시 연도 다음연도 6월 이후 공식 취업률 집계).

자료: 고용노동부, 2015. 10. 13(한정수(2015: 58)에서 인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2018년 6월 현재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2005년에 출발한 자영업자 대책이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Ⅲ.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정책 과제

앞에서는 현재의 자영업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확인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여 보도록 하자. 다만 여기에 서는 단기의 처방은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궁극의 자영업 문제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2005년의 5·31대책에서 수립하였던 정책 기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실화하자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노동자와 달리 실업, 재해 등의 모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제적 주체로만 바라보지 말고,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이 제시하는 몇 가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책 효과 제고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부채, 임대료, 카드 수수료, 신용,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속에서 올해와 내년에 최대 7조 원이 넘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2018년 8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8월 22일 당정협의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 대책에 카드 수수료 경감 등을 포함하면, '7조 원+α' 규모의 지원이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로 볼 때,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은 대체로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세부 계획에서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된 정책 평가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는 한정수(2015)를 제외하면, 그다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책을 평가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자훈련과 유사한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보험제도로 구성됨을 이미 설명하였다. 이는 마치 바로 앞에 언급한 자영업 부문의 입구와 출구에 고용노동부가 서 있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자영업에 들어가려는 사람과 자영업에서 나오는 사람이 정책의 대상인 것이다. 5·31 대책의 기본적인 틀이 바로 이 입구와 출구의 통제였다. 입구는 좁게

〈표 4〉 소상공인 지원 대책 효과

(단위 : 조 원)

		2018년	2019년(잠정)	증감
직접 지원	근로장려금(자영업자 혜택분)	0.4	1.3	+ 0.9
	일자리안정자금	3.0	3.0 이내	-
	두루누리지원사업	0.9	1.3	+ 0.4
	1인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등	0.24	0.57	+ 0.33
경영비용 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0.3 이상	+ 0.3 이상
	세제혜택(지원기간 연장 제외)	-	0.15 이상	+ 0.15 이상
	경영여건 개선(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용 등)	0.07	0.18	+ 0.11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역량 강화 지원(판로지원, 시설개선, 재창업·취업 지원, 창업교육 등)	0.22	0.36	+ 0.14
합 계		4.8	7.1 + α	2.3 + α

자료 : 국민일보, 2018년 8월 23일 기사.

그리고 출구는 크게 하려는 정책이라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구를 좁게 하려는 정책이 잠재적 자영업자에게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말았다.

자영업 영역 내에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주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희망 리턴 패키지사업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기에 실제로는 자영업 영역 내에 고용노동부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승렬 외(2009)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stop service center)의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다. 창업, 경영자금 조달, 컨설팅, 전·폐업, 전직 서비스 등 여러 지원 서비스가 자영업자에게 필요함에도 당시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담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어느 정도 이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센터의 핵심은 상담인력이다. 이른바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 하겠다. 창업을 생각하는 잠재적 자영업자, 성장 단계의 자영업자, 사양길에 접어든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여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폐업·전직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상담전문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자치단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신용보증기금 등과 가지는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종의 집단대응체계의 수립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영업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의 안정성, 소득, 노동시간,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자영업자의 모습은 ‘사장님’이라 부르기에는 낮부끄러운 사정이기도 하다. 많은 자영업자는 사실 ‘숨겨진 노동자’와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5년의 5·31 대책이 내세웠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영업자를 ‘사업주’만이 아닌 ‘취업자’로서 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에게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단독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에도 이른바 ‘동업조합’이 기능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요청하여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一人親方)가 조합을 만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일종의 ‘사업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 가지 대안이라 한다면, 지역상공회의소나 업종별 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주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¹⁰⁾

산재보험 가입과 함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필요하다. 이들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상당수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통계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대책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재해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무 가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그나마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반지’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그나마 임금노동자에게만 이 고용보험의 혜택이 가능하였으나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특히 사업 유지 기간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보다 짧은 자영업자에게 다음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는 소득보조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가 이러한 보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가운데 3할 정도는 여성이다. 가입기 여성에게는 모성보호 정책이 필요하

10) 이 글을 탈고한 이후에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9월 13일에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추가한다는 취지의 입법예고를 하였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44호).

다. 이들의 모성보호를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서 도와주는 정책을 고민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 창·폐업에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

최근 들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영업 부문이 끌어들이는 요인보다 임금노동 부문이 밀어내는 압력 때문이라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미 설명을 하였듯이 자영업자는 자영업 부문 내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하다. 사실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주로 안정된 일자리로 가기가 어렵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임금노동 영역에 머무르다 다시 자영업 영역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영업 부문에서 나오는 자영업자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적절한 직업훈련 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임금노동 영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영업 영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밀려나온 만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노동 영역의 입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도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장기적인 방안일 것이므로 몇 단계는 거쳐야 하리라 본다. 이 단계란 자영업자 속에 숨어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내고, 이들이 고용안전망에 포섭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점차 자영업자로 안전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영업 부문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임금노동 영역에서 퇴직한 중고령자가 자영업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노동시장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자영업 부문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이 임금노동 영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효과가 중요하다. 정년연장과 함께 고용유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신중년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자영업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자영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고용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원이 자영업 부문에 유입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각의 노동시장 정책이 지향하는 표적은 다를지라도 큰 틀에서 본다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외부적 효과도 발생한다. 결국 고용노동부 내의 여러 고용정책의 조합을 통한 연대가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영업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충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4.0’이라는 숫자로 대신하고 있다. 사실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의 자영업은 ‘자영업 1.0’이나 잘해야 ‘자영업 2.0’이라 하는 것이 어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 1.0에도 ‘배달앱’이 등장하는 등 자영업 3.0도 존재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정주부도 자영업 3.0에 속하지 않을까? 우버(Uber) 택시 운전자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자영업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플랫폼 경제의 발달은 자영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프리랜서(freelance)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프리랜서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사업주라는 개념도 노동자라는 개념도 모호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자영업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이 흐름에 휩쓸려가기보다 파도에 잘 올라탈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도 ‘자영업 4.0’을 고민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찬반론이 팽팽하지만, 자영업 부문 내의 학력 구성도 고학력자 중심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를 부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게도 일종의 ‘향상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영업 부문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지만, 미래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자영업자에게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주며,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가진 잠재적 자영업자의 진입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기업이나 노동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도 ‘포용’하는 정책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덧붙이는 말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경기의 영향일 가능성이 첫 번째이다. 자세히는 어느 업종과 지역에서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되돌아오는지 등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과제가 많다. 만일 경기와 관련된 결과라 한다면, 내수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역, 업종의 자영업자 감소를 참고하여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관찰이 필요하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 감소로 전환되며, 이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이 영향을 선제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비용 측면의 부담을 경감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도 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휴·폐업 예정의 사업체에게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일시적 고용유지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때,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자영업 영역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일 것이다.

개편 예정이라는 얘기가 들리기는 하지만,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는 ‘자영업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자영업자 영역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자영업자 정책의 수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해내는 통계 개발이 절실하다. 이는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포착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한다면, 자영업 문제 해결의 한 가지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생산자-소비자, 사업주-종업원, 생산자-생산자의 연대를 지향한다. 달리 말하면, 포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은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를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 보면, 생산자 잉여(producer's surplus)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나 협동조합은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잉여의 합을 조합원이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KLI](#)

[참고문헌]

- 강지수·전현배·조장희(2017), 「진입퇴출과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 과밀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5(4), 한국경제학회, pp.129~157.
- 권일(2018),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간 소득차이 및 빈곤위험 분석」, 『산업동향&이슈』, 2018년 8월호(통권 제11호), 국회예산정책처, pp.31~46.
- 이승렬(2011), 「지난 10년간의 자영업을 되돌아본다」, 『노동리뷰』, 2011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3.
- 이승렬·김종일·박찬임·이덕재·홍민기(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 전인우·정완수(2014),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중소기업 포커스』, 제14-12호, 중소기업연구원.
- 정호성(2018),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2018-5호, 한국은행.

한정수(2015),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홍석일 · 지민용 · 신종원 · 한창용(2016),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 사이트(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stat/stat.jsp?mode=view&article_no=727038&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data%2Fstat%2Fstat.jsp&pager.offset=0&board_no=219).

머니투데이 2018년 9월 6일 기사(<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041619231942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국민일보 2018년 8월 23일 기사.